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03

발의연월일: 2020. 7. 30.

발 의 자:임호선·김주영·허 영

민형배 • 이용우 • 진성준

홍성국 · 이용선 · 오영환

이수진 • 이규민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호주 등 해외 67개국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번역공증 서류만 있으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의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19. 9. 16.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인정국가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 서류 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이에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외국과의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결격 규정 및 자동차

운전 금지규정 등에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 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제88조제1항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운전면허"를 "국제운전면허증" 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을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면허증"으로 한다.

제152조제1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154조제2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②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
	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운
	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	<u>허중</u>
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 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 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 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u>국제운전면허증</u>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 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 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 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 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u>국제운전면허증</u>으로

<u>,</u>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
시 등의 의무) ①
1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
<u> </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
<u>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u>
<u> 운전</u>) ①
국제운전면
허증 또는 외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u>국제운전면허증</u>에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 1. ~ 2. (생 략)
-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u>국제</u> <u>운전면허를</u>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생략)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 제96조에 따라 <u>국제운전면허증</u>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u>또는 외국면허증</u>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 = 0 , = -/
0 7 -1
3 <u>국제</u>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
<u>으</u>
②
<u>사람 또는 외국</u>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세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u>국제운전면허</u>
증 또는 외국면허증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국제운전면허증</u>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u>국제운전면허증</u>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 에게 그 <u>국제운전면허증</u>을 제 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 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 인 <u>국제운전면허증</u>을 돌려주 어야 한다.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
<u>Z</u>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
<u>국면허증</u>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허증
③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면허증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①

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u>국제운전면허증</u>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② • ③ (생 략)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 6. (생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 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 ~ 2. (현행과 같음) 3
o. <u>국제운전면허증 또는</u> <u>외국면허증</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벌칙)
1
<u>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면</u> <u>허증</u>
 2. ~ 6. (현행과 같음)
제154조(벌칙)

이] 처	ㅎ	トロ	L
\sim 1	1 /\I	Y		Ι.

- 1. (생략)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 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 8.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운전면허증 또
는 외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
<u>국면허증</u>
3. ~ 8. (현행과 같음)